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제작기업 유치 재정지원〉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07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제작기업 유치 재정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4.
3. 회부연월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제작기업 유치 재정지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하 “영상제작기업”)에 영상제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지원금 부정신청·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취소·철회·감액·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영상제작에 대한 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하 “영상제작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영상제작의 국내·외 파급효과, 고용창출 규모, 기술·노하우 이전효과, 입지 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제작기업에게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영상

현행	개정안
	<u>제작기업, 지원금 사용용도, 지원한도 및 산정방법, 지원신청 및 심사절차, 영상제작기업과의 지원금 협상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다.</u> <u>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u> <u>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u> <u>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 <u>3. 법령, 지원결정 또는 지원계약을 위반한 경우</u> <u>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u>

현행법 제16조제2항1)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주요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부지조성 및 임대료감면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도 현행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의 주요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완화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표 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입주기업 지원비용항목

구 분	임대부지조성, 임대료감면비용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시설* 설치·운영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제1호)	○	○
입주국내복귀기업(제2호)	○	○
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3호)	○	×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4호)	○	×

자료: 동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요약

* 의료시설 · 교육시설 · 연구시설 · 주택 등

개정안은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중 영상제작기업에 대해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초기투자비용 중심 지원과 달리 영상제작 단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영상제작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1. 고용창출의 규모
2. 기술이전의 효과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
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영상제작기업 특성상 넓은 부지를 임대하거나 각종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제작비용이 주로 소요되므로, 노무비·임차비 등의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투자유치에 보다 적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영상제작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지원하려는 법률들과 달리 동 법률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과 법 체계를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특정 산업분야를 명시하고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노무비·임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